

2021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사전안내

2021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사전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일정 등을 포함한 『2021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2021년 1월 중순 이후에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공지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2021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일정

구분	시 험 명	시험공고	원서접수	시험일정(안)		
				필기시험 (1·2차 병합)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공채	8·9급 공채	'21.1월 중순 이후	3월말	6. 5.(토)	7월	8월
	7급 공채	'21.1월 중순 이후	7월	10. 16.(토)	12월	12월
경채	1회 경채	'21.1월 중순 이후	1월	2.27.(토)	4월	4월
	2회 경채	'21.1월 중순 이후	3월	4.17.(토)	5월	5월
	3회 경채	'21.1월 중순 이후	7월	10. 16.(토)	12월	12월

※ 채용예정 직렬(직류) 및 인원은 미정으로, 해당 시험공고문 참고

- 붙임 1. 2021 ~ 2023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1부.
2.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 안내 1부.

1 2021년 변경사항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

□ 중복 접수 불가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 접수 불가** (반드시 1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선택하여 응시)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 붙임 2 참고

- 영어 과목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토익, 토플, 텡스, 지텔프, 플렉스)
-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 영어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영어 3년 → 5년, 한국사 4년 → 5년)

2 2022년 변경사항

□ 과목 개편

1. 8·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 행정직군의 필기시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과학·수학' 과목 제외**
- 일반행정, 기업행정, 속기 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 과목 제외**

2. 8·9급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과목 수 변경: **2과목 → 3과목**
- 시행 시기: 2022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 적용 대상: (8·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 직렬(직류)
- 해당직렬(직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수를 축소 시행한 경채 직렬(직류)

○ 시험 과목: 관계 법령* [별표]에서 경제 직렬(직류)별 제1차2차 필수 과목 확인
(제1차 필수 과목 + 제2차 필수 과목)

* 관계 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9의2

< 시험과목 변경사항 (예시) >

구분		변경 前	변경 後
직렬	직류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 과목
공 업	일반기계	2과목 (물리, 기계설계)	3과목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2과목 (물리, 전기이론)	3과목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 설	일반토목	2과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3과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	2과목 (물리, 건축계획)	3과목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교통시설	2과목 (물리, 교통공학개론)	3과목 (물리, 교통공학개론, 교통계획)
	도시교통설계		
해양수산	일반선박	2과목 (물리, 선박일반)	3과목 (물리, 기관일반, 선박일반)
	선박항해		3과목 (물리, 선박일반, 항해)
	선박기관		3과목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식품위생	식품위생	2과목 (화학, 식품위생)	3과목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의료기술	의료기술	2과목 (생물, 공중보건)	3과목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환 경	수 질	2과목 (환경공학개론, 화학)	3과목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대 기		3과목 (환경공학개론, 화학, 지구과학)
	폐 기 물		3과목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운 전	운 전	2과목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좌 동

※ 운전·방호·시설관리 직렬 등의 필기시험 과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9의2에 따라 2과목 적용

3 2023년 변경사항

□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 2월 졸업예정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 2월 졸업예정자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

붙임 2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

1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토플(TOEFL)		토익 (TOEIC)	텡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2018.5.12. 전 시험	2018.5.12. 이후 시험		
일반	530	71	700	625	340	65(level 2)	625
청각장애인	352	-	350	375	204	-	375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FL, TOEIC,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사전등록해야 함** (단, 플렉스(FLEX)는 성적유효 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기에 사전등록 불요)
 - 토익, 텡스, 지텔프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 **사전등록일 기준으로 각 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험성적만 등록가능**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함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P.5 참고)

2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 범위

1. 영어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 ①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 ②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인 사람(진단서 반드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舊2·3급으로,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2. 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

- 7급 영어 기준점수

시험명	TOEFL(PBT)	TOEIC	TEPS		FLEX
			'18.5.12. 이전시험	'18.5.12. 이후시험	
7급 공개경쟁임용	352	350	375	204	375

3. 제출서류 등 안내

① (제출서류) 의사진단서*(의사 소견서 불인정)

*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②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가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③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가)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 예시표 표시 내용 ①

(나)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예시표 표시 내용 ②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에 따라 검사

(다)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 예시표 표시 내용 ③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상기인은

-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말소리)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
- ②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 어음(말소리)분별력이 30%인 사람으로서
- ③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① (신청·제출 : 응시자 → 경기도)

-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하고,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진단서를 별도 안내하는 기한까지 우편(등기)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 예 : ☒ (체크)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

※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주소는 원서접수 화면에서 별도 안내 예정)

② (대상 확인 : 경기도 → 응시자)

-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자료 보완 요청 등 추가 안내 예정

③ (인정기간)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해당 시험에 한함

-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신청)하되, 진단서는 최초 1회 제출하면 진단서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

5. 유의사항 등 안내

-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

-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인정범위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성적등록 및 확인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일자·인증번호·인증등급 등 입력
 - ※ 필요 시 진위확인을 위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에 **사전등록 불필요**